

## 교외연구사업 유치 기획연구비 지원 관리 지침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교외연구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비를 지원하여 산학협력단 교외연수사업 수주 활성화 및 학술연구의 실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신청대상)** 사업신청서에 현물 및 대응자금을 제외한 사업비규모(1차년도분만 해당)가 3천만원 이상인 과제로 **간접비 징수율이 10% 이상인 과제 또는 간접비 징수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과제에 한한다.**

**제3조(지원범위)** 사업신청서 작성을 위한 운영경비(회의비, 출장비, 제본비 등)를 지원한다.

**제4조(신청시기)** 과제 공고일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교외연구사업 유치 기획안 및 공고문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한다.

**제5조(선정방법)** 교외연구사업 유치 기획안 검토를 통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선정한다.

**제6조(지원금액)** 교외연구사업 신청사업비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.

(1년기준)

구분	3천만원이상~ 5천만원미만	5천만원이상~ 2억원미만	2억원이상~
지원금액	20만원	50만원	80만원

부칙

①(시행일) 이 기준은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